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

- 충남지역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Group Hom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 With Focus on Demonstration Projects in the Chungnam Region -

박 현 춘*

김 승 근**

박 광 범***

Park, Heon-Choon

Kim, Seung-Keun

Park, Kwang-Bum

Abstract

Due to rapid decrease in popula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drain of young rural manpower to the cities, aging is being intensified, and the conditions of housing and welfare of elderly households are inadequate. Currently, group home is being discussed as part of specialized housing and welfare support policy for the people in the vulnerable class with poor self-supporting abilities such as the aged living alon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aged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proposing the policy of supplying group home through examining the realities of housing and welfare of the people in the vulnerable clas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4 regions -Cheonan-si, Gongju-si, Yesan-gun, and Seosan-si - whose apartments were all occupied by the residents among the group hom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n Chungcheongnam-do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First, great effects can be attained at small costs by reorganizing and utilizing the public facilities that are unused or little used and the existing houses that are exposed to risks due to improper maintenance. Seco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as improved without impairing the existing village landscape. Third, housing welfare was enhanced without investing a large sum of money and the system to promptly cope with negligent accidents and emergency can be built and operated. Fourth, the cases promot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oor, unhygienic, and unsafe housing of the elderly and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ere very positive and well worthy of being presented as planning direction of future group home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inally, if they are operated entirely for free, it will cause the lack of the sense of ownership and the problems in securing the budget, so the ways of paying minimum individual housing expenses should be examined.

The alternatives of housing welfare for the vulnerable member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needed and the ways of constructive planning and researches should be continuously made. Also,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should be actively promoted.

키워드 :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노인복지, 주거복지

Keywords : Elderly Living Alone, Group Home, Aging Society, Aged Society, Elderly Welfare, Housing Welfar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많은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을 앞서고 있으나 사회복지의 수준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UN은 고령이라는 현상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전체인구 중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超)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개념화한 것이 연구 공동체의 합의 사항¹⁾이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대비 고령인구가 1970년 3.1%, 1980년 3.8%, 1990년 5.1%, 2000년 7.2%를 돌파함으로써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

이처럼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젊은 인력의 도시 유출로 인해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취약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복지의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노인가구의 주거편의시설 개선 또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농어촌 고령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매우 과중한 실정이다.

* 정회원,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전문관, 박사수료

** 정회원, 극동정보대학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시범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혀둡니다."

1) 이나희, 고령화 사회 노인이 지각한 가족권속력과 삶의 질 관계,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0.08, p6

2) 통계청, 2009년 고령자(65세이상 독거노인, 고령화사회, 노인가구 등) 통계자료 참고

정부의 주택공급은 도시가구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주거지원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농어촌주택개발사업³⁾을 통해 농어촌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지원(용자) 자체도 신용과 상환능력이 있는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소농,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 고령 농어가 등 자부담 능력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주거복지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안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주거가 논의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어촌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태와,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주거를 지원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시범운영 지역 중 2010년 8월 현재 입주를 완료한 4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기존 문헌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택정책 추진동향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 (2) 충청남도의 시범사업 추진배경과 현황을 고찰하고, 실제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공동생활주거의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 (3) 시범사업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도출, 향후 다양한 취약계층의 거주환경을 고려한 공동생활주거 방식의 대안을 모색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농어촌의 주택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대부분 도시지역의 주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은 미미한 실정이다.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가구수가 전국의 20%에도 미치지 못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이나 여건이 도시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농어촌 지역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 지역별 가구규모

구분	가구수(만 가구)	비율(%)
전국(2008년 추계가구)	1,667.3	100.0
도시(동)	1,337.1	80.3
농촌(읍·면)	328.2	19.7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8년 주거실태조사

농촌 거주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농촌가구는 도시가구에 비해 평균 가구원수가 적고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것이 특징⁵⁾이다.

또한 농촌가구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비중이 도시에 비해 매우 높고(약 6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이 낮다.

표 2. 지역별 소득계층별 분포

지역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계
전국	39.5	41.8	18.7	100.0
농촌	60.4	31.1	8.5	100.0
도시	34.3	44.5	21.2	100.0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8년 도 주거실태조사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농어촌 가구는 도시가구에 비해 소득, 생활비, 주거비가 모두 낮은 수준이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생활비와 주거비의 비중은 매우 높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재고 중 공가비율은 9.5%로 주택재고 322.5만호 중 공가는 30.8만호이다. 농어촌의 가구는 도시가구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높고 미달가구의 대부분이 시설미달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구에 비해 농촌가구는 상대적으로 건축연도가 오래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어촌지역의 경우 주택이 노후화되고 주거시설이 열악하며 공가비율이 높고 거주자의 경우도 노인과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개별적인 주택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폐가가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주택관리의 문제, 거주환경의 안전,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며,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택과 노후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상태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거주환경을 자료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2.2 농어촌지역 주택정책 추진동향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을 농어촌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2006년 4월 국토부와 농식품부 양 부처간 협의에 의해 2016년까지

5) 통계청, 2009년 고령자 통계자료 참고

3)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발사업은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담보물 제공할 능력이 있는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0년 현재 4,000억원(8,000가구)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리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1가구당 최대한도는 신축기준 5,000만원이며 부분개발을 할 경우 최대 2,500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다.

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나눔경영실천 및 경로사상 고취 차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농어촌지역에 11만호의 농촌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개발사업 위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농어촌주택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식품부의 농촌주택정비사업을 2007년 통합·이관하여 2008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을 고취함이 목적이다.

사업의 성과 목표는 '09~'13년까지 34,000동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를 지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으로 도시민의 이주를 촉진하는데 있다.

(2) 빈집정비사업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199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빈집은 농어촌 지역의 경관 및 생활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1995년 12월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빈집정비에 대한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31일로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3) 전원마을조성사업

이 사업은 문화마을조성사업을 모태로 하였으며 전 국민의 20% 이상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비전으로 자연친화적이며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치를 위해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2.3 농어촌지역 주택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독거노인 및 영세농어민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고령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농촌주택정책은 아직까지 가시적이지 못하며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고령자 문제를 단순히 노인복

지시설의 확충과 같은 복지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의 주택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령자의 생활양식(유형) 등을 고려한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된 종합적 주거환경 정비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 더불어 단일 주택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의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농어촌경관과 지역성, 환경, 어메니티 등을 고려한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3. 충청남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분석

3.1 추진 배경 및 방향

충청남도는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추진계획」을 2010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독거노인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자연마을 단위의 경로당·마을회관·유휴주택을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충청남도는 현재⁷⁾ 도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93,6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율 14.6%는 우리나라 전국 시도 중 4번째이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23년에 20% 진입이 예상 가능하다. 이는 매년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씩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 수는 69,144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노인인구 중 23.5%에 해당된다. 이 중 요양보호대상자는 57,622명으로 치매환자가 2,933명, 중증환자가 10,164명, 경증환자가 44,525명에 이르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도 13,975명에 이른다.⁸⁾

이처럼 매년 노인수와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여건의 부족으로 대응 시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동절기 안전사고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노인자살·질병·방임·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 행·재정적 지원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노인들의 안전확인, 생활안정, 건강유지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연마을 단위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취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특히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마을 내 사용률이 저조한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일반 주택을 활용하였다. 시설을 보수하고 침구 및 공동으로 사용할 가재도구 등 기본 인프라 구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운영비의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대표자가 관리·운영토록 하였다.

6) 백성준, 유윤석 외, 농어촌 마을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9.7, p.29

7) 2010년 7월 기준

8) 충청남도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자 제공

3.2 추진계획 및 추진일경

충청남도는 주무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하여 16개소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260,800천원(도비30%, 시군비70%)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1개소당 지원되는 보조금은 16,300천원이며, 이 중 12,000천원은 인프라 구축비로 활용되었고, 4,300천원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다. 사업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소요사업 내역(단위:천원)

항목	사업비/개소	내역
소요예산	총260,800 도비 78,240 시군비 182,560	· 개소당 지원비 16,300 (도비4,880, 시군비11,410) (도비30%, 시군비70%)
사업량	16개소	· 적정대상자 공모 후 시군 자체심사 후 선정 · 시군별로 1개소씩 자연부락 단위로 우선 선정
인프라 구축비	개소당 12,000	· 기존 시설을 최대 활용하되 노후시설 보수 · 보일러보수, 시설보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 등
운영비지원	개소당 4,300	· 운영비 : 월 300 (통신료, 급식용품 구입 등) · 난방비 : 년 700 (겨울철 난방비, 공공요금 등)

(1) 대상지 및 대상자 선정

대상지 선정은 충청남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대표 등에게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마을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시·군에 계획안을 제출,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나아가 시·군별 1개소 시범운영을 목표로 시범마을의 효율성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자연마을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과 독거노인의 빈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마을 여러곳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였다. 그 외 선정 기준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2월~3월에 시군별 첫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상지를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시군별로 공모를 통해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에 입소할 대상자를 조사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실제 입소 가능한 노인을 파악하였다. 이후 공동생활에 따른 관리 운영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2) 운영방법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를 운영함에 있어 취사 및 숙박만 공동생활주거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독거노인 각 개개인의 생활근거지는 그대로 두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생활하도록 하였다. 또한 낮에는 지역에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5~6명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규모로 공간을 조성하였다. 공동생활주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비는 마을대표자가 관리·운영하도록 하였다.

(3) 사업비 지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는 공동생활주거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개보수와 도배 등 실내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취사도구 및 기본적인 생활용품 등을 구비하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보일러, 도배 등 공동생활시설의 개보수시 희망근로 사업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4) 사후관리 대책

각종 안전사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소방부서와 협조하여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협의하고 조치하였고, 각종 안전사고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119, 노인 돌보미, 노노케어와 연계, 마을이장 등 전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 등 읍면동단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5) 성과분석

공동생활주거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에 따라 2011년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3 실태조사 및 분석⁹⁾

충청남도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추진계획의 수립에 따라 2010년 8월 1일 4개소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입주를 위한 시설 보수 중에 있었다. 실태조사 및 분석은 입주가 완료된 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지역에서 활용이 저조한 공공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거나 마을의 독거노인 중 주거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집을 5년~15년간 무상 임대하여 시설을 보수한 후 공동생활주거로 활용하였다.

표 4. 충청남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시범사업지역

시군	사업대상지	형태	인원	입주일
천안시	·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2리 680-20	경로당 활용	7명	2010.6.15
공주시	·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139-5	개인주택개조	5명	2010.7.27
예산군	· 예산군 예산읍 상성리 332-8	할머니 경로당 활용	6명	2010.6.20
서산시	· 서산시 해미면 흥천리 633	개인주택개조	6명	2010.7.1
계룡시	· 계룡시 향안2리	경로당 활용	7명	2010.8월 공사중

9) 3.3 실태조사 및 분석은 「최효승, 김승근, 공동체형 농어민 그룹 홈 개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2010.9」에서 충남지역사례를 재구성

충청남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역의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해소하여 독거노인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였으며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1)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 공동생활주거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은 기존의 경로당을 활용해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를 겸용하도록 한 유형이다. 기존의 경로당 기능을 수용하면서 마을내 거주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주거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마을대표자와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 조직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자 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안전확인을 하는 등 공동생활주거의 관리 체계가 입소 초기부터 확립되었다. 천안시의 경우 경로당을 활용해서 지자체에서 연간 4,300천원씩 지원하는 운영비 외에 매달 130천원씩의 경로당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표 5. 천안시 공동생활주거 건축 개요

연면적	건축규모		용도	텃밭유무
	공간구성	거주자 수		
93.84㎡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방1.2, 창고	7명	경로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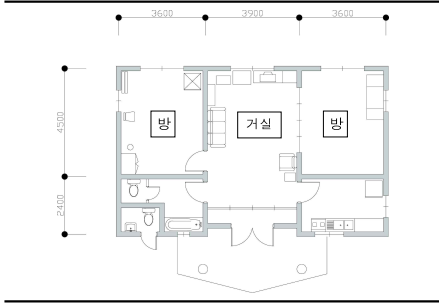


그림 1. 천안시 공동생활주거 평면

천안시 공동생활주거에는 현재 남자2명, 여자4~5명으로 총 6~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입소자의 평균 연령은 80세이며 거주자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다.

천안시 공동생활주거는 경로당이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낮에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밤에는 입소자가 머무르고 있다. 경로당의 기능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을 이용할 경우 건축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

고 마을내 친숙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향후 농이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생활주거의 대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2. 천안시 공동생활주거 현황 사진

(2)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공동생활주거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공동생활주거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의 개인주택을 일부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정비 이전에는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주변이 관리되지 않아 노후된 상태였으나, 현재는 정비를 마쳐 마을의 독거노인 5명이 입소해 함께 생활하고 있다.

표 6. 공주시 공동생활주거 건축 개요

연면적	건축규모		거주자 수	용도	텃밭유무
	공간구성				
73.47㎡	마루, 방1·2, 화장실, 주방(주인집과 공용)/주인집: 방1, 욕실, 보일러실		5명	일반주택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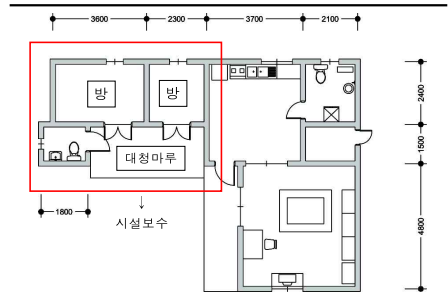


그림 3. 공주시 공동생활주거 평면

공주시 공동생활주거는 소유주와 10년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마을대표자를 중심으로 마을 자체에서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입소자 중 남자는 없고 여자만 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다.

이 유형은 마을 내 유희주택에 대한 재활용을 통해 공동생활주거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을회관을 활용한 공동생활주거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건축비를 절감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하나의 방에 3~4명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다소 침해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림 4. 공주시 공동생활주거 현장 사진

(3)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공동생활주거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는 천안시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경로당을 공동생활주거로 이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곳의 경로당은 남녀 구분이 있으며 현재 여자 경로당이 공동생활주거로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7. 예산군 공동생활주거 건축개요

연면적	건축규모	거주자 수	용도	뒷밭유무
	공간구성			
49.14㎡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경로당, 사무실, 옥외창고	6명	할머니 경로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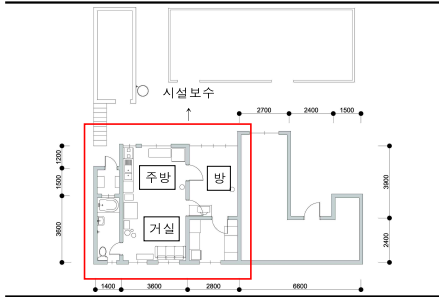


그림 5. 예산군 공동생활주거 평면

천안의 경우처럼 마을의 공공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 4,300만원의 운영비 외에 월 130만원의 경로당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가 자체 운영하며 충무를 선출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 자체적으로 월 5천원의 회비를 걷어 운영비에 포

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경로당의 기능을 공유하기 때문에 낮에는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고 밤에는 입소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치매예방 프로그램(그림그리기 외)과 화·목요일에 요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입소자는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다.



그림 6. 예산군 공동생활주거 현장 사진

(4)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 공동생활주거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는 정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마을의 사랑방으로 불리며 주민들이 모이던 개인주택을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소유자가 마을에 개인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원비를 받아 시설을 보수하고 마을의 공공장소로 새롭게 변모되었다.

표 8. 서산시 공동생활주거 건축개요

연면적	건축규모	거주자 수	용도	뒷밭유무
	공간구성			
35.64㎡	거실, 주방, 화장실/주인실: 방·2,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창고	6명	일반주택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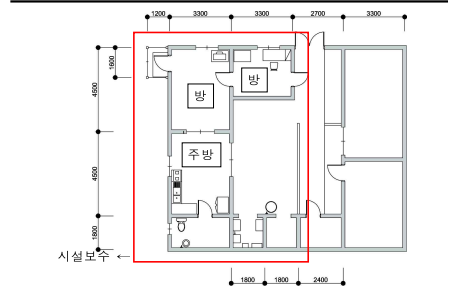


그림 7. 서산시 공동생활주거 평면

서산시는 마을대표자와 청년회, 부녀회가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 개인주택을 제공했지만 본래 사랑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터라 낮에는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마을의 독거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명이 입주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한 경로당은 아니지만 경로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8. 서산시 공동생활주거 현장 사진

3.4 종합분석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시범사업은 마을단위의 정책으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석되었다.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시설과 관리가 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존의 주택을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기존의 마을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본 사례조사 대상의 운영방법은 매우 가치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향상시켰으며, 독거노인들의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수 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에 마련된 새로운 보금자리로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이웃과 함께 남은 노후를 보다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다만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차질 주의의식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며, 통신훈·급식용품 구입비·난방비·공공요금까지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되다보니 향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공동생활주거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적인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용 사물함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예산군의 경우 입주자 6명이 월 5천원씩을 걷어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생활주거에 대한 주의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최소한의 주거비 납부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산군의 경우처럼 지역의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시범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역의 시범사업은 지역의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향후 노인돌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면 주택이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발생하는 행·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약자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디자인을 도입한 사례가 전무한 것이 충남지역의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의 한계로 지적된다. 물론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기존의 환경보다 많이 개선되었기에 새롭게 주어진 공간에 대한 불편함이나 개선점이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표 9. 충청남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현황

구분	천안시	공주시	예산군	서산시
유형구분*	■ + ○	○ + ▲	■ + ○ + ▲	■ + ○ + ▲
사업개요	충남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 2리 680-20 경로당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159-5 개인주택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52-8 할머니 경로당	충남 서산시 해미면 흥천리 633 개인주택
입주일	2010.6.15	2010.7.27	2010.6.20	2010.7.1
연면적	93.84㎡	73.47㎡	49.14㎡	35.64㎡
공간구성	거실, 주방, 방1·2개, 화장실	마루, 방1·2개, 화장실, 주방, 주인집(방1, 욕실)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거실, 주방, 화장실, 주인집
탄발유무	X	X	X	X
운영방편	마을대표자와 부녀회 등 마을자체 운영	마을대표자가 집주인과의 협의 하에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경로당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운영	마을대표자가 집주인과의 협의 하에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예산지원	사업사업 운영비 연 4,300천원 경로당 운영비 매달 130천원	사업사업 운영비 연 4,300천원	사업사업 운영비 연 4,300천원 경로당 운영비 매달 130천원	사업사업 운영비 연 4,300천원
시설유지관리비용	지자체에서 지원	지자체에서 지원	지자체에서 지원	지자체에서 지원
입주자	7명(남2, 여5)	독거노인 할머니 5명	독거노인 할머니 6명	독거노인 할머니 6명
기타	낮에는 마을회관으로, 밤에는 공동생활제로 활용	집주인과 10년 계약으로 지속적인 운영가능	5천원씩 회비를 걷어 운영비에 조달 복지프로그램 실시	제2의 마을회관(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 : ■ 마을회관 / ○ 그룹 홈 / ▲ 주거(공용)

통해 노약자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디자인이 도입된다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및 제언

충청남도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시범운영 지역 중 2010년 8월1일 입주자 완료된 천안시, 공주시, 예산군, 서산시의 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시설과 관리가 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존의 주택을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마을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거복지를 향상시켰고,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넷째, 취약계층의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며 불안정한 노인주거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추진한 사례로는 매우 긍정적이며, 향후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주거 계획방향을로서 충분히 제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방법에 있어 전액 무료로 운영될 경우에는 주인의식 결여,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군의 경우처럼 최소한의 개인 주거비 납부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번 충남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공동생활주거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안이 필요하며 건축적 계획 방안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및 영세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수요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의 여건과 실태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개별 주택을 정비하거나 신축을 통한 문제해결과 더불어 노약자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디자인을 도입하여 편리함을 넘어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감동까지 선사해

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¹⁰⁾이 도입되어야 한다.

(3) 노인복지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의 공공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이나 빈집을 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농어촌의 공동체를 회복을 위해 가장 친근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을 넘어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적재적소에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공동생활주거를 단순히 시설개선을 통한 복지실현으로 여기기보다, 일차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사람·공동체(마을)·역사(삶)가 지켜가는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주거복지 측면의 대응책에 대한 인식과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했고, 고령자의 주거문제를 단순히 무료양로시설의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노인주거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 다.

참고문헌

1. 김강섭 외,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개발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0.12
2. 백성준, 우윤석 외, 농어촌 마을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9.7
3. 이나희, 고령화 사회 노인이 지각한 가족결속력과 삶의 질 관계,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0.8
4. 최효승, 김승근, 공동체형 농어촌 그룹 홈 개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2010.9
5.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8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2009.4
6.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7.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10) 특별한 개조나 특수설계 없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뻐할 제품이나 환경 디자인을 일컫는다.